

단체실손의료비보장 중지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단체실손의료비보장 중지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단체실손의료비보장 중지특약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단체실손의료보험(이하 '단체실손'이라 합니다)의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해당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단체실손을 중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체실손의료보험]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을 말합니다.

제2조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① 계약중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각 호의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실손의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실손의 보장종목 전체에 대해 보장의 중지(이하 '계약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이라 합니다)의 피보험자인 경우
2.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실손 이외의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인 경우

[개인실손의료보험]

노후·유병력자·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합니다.

[계약중지 신청일]

피보험자가 계약중지 신청을 회사에 접수한 날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해당 단체실손의 보장종목 전체」라 함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급여실손의료비특약 약관 및 비급여실손의료비특약 약관의 보장종목 전체를 말하며 보장종목 중 일부를 선택하여 계약중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③ 계약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중지 확인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와 회사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에 계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중지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릴 수 있고 이는 피보험자에게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④ 계약중지는 피보험자의 계약중지 신청일부터 시작되고, 계약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시점부터 회사는 계약중지 피보험자의 단체실손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중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중지된 단체실손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는 계약중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기일에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중지지급금의 산출과 지급)

- ① 이 약관에서 「중지지급금」이라 함은 단체실손을 중지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중지한 단체실손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중지시점의 미경과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중지지급금」은 중지한 단체실손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중지시점의 미경과보험료 및 제2조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제4항에 따라 계약중지 신청일 이후 납입된 것에 해당하는 보험료 합산액을 말합니다.

[미경과보험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중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납입 주기별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주기 및 경과기간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계약중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중지지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사는 마지막 분납회차 보험료 납입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중지지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마지막 분납회차 보험료 납입시점 예시]

- 월납의 경우 : 납입회차 12회차 보험료 납입시점
- 3개월납의 경우 : 납입회차 4회차 보험료 납입시점
- 6개월납의 경우 : 납입회차 2회차 보험료 납입시점

- ③ 해당 지급기일내에 「중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중지지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④ 중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중지지급금의 환수 및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1. 중지지급금을 받은 이후 중도퇴사한 경우
2. 회원탈퇴 등 1회에 준하는 사유

제4조 (계약중지 신청의 취소)

- ① 피보험자는 「계약중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중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유효한 계약중지 전 단체실손으로 환원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신청취소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계약중지 전 급여실손의료비특약 약관 및 비급여실손의료비특약 약관을 따릅니다.
- ③ 계약중지 신청과 계약중지 신청 취소는 계약중지 전 단체실손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합니다.

제5조 (계약중지 신청의 취소의 제한)

제4조(계약중지 신청의 취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회사로부터 「중지지급금」을 받은 경우 회사에 「중지지급금」을 환입하기 전까지 계약중지 신청의 취소가 제한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중지 전 단체실손의 약관, 급여실손의료비특약 약관, 비급여실손의료비특약 약관을 따릅니다.